

「일본식 한자어 사용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12월 29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18년 1월 11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34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18년 1월 11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기획감사실장 남동선)

가. 제안이유

-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에서는 중앙부처의 법령과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 또는 통용되는 한자어로 정비를 추진 중임.
- 우리 군 조례 중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일괄정비함으로써 행정용어의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, 자치법규에서 쓰이는 용어를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평창군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인용사항 일괄 정비

「평창군 HAPPY700 사랑나눔운동 지원 조례」 등 8개 조례, 8건 정비

용 어	순화어	인용 자치법규	건수
구좌	계좌	• 평창군 HAPPY700 사랑나눔운동 지원 조례	1
지득하다	알게 되다	•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	1
납골당	봉안당	• 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	1
부락	마을	• 평창군 반 설치 조례	1

용 어	순화어	인용 자치법규	건수
행선지	목적지	• 평창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	1
계기하다	규정하다	• 평창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	1
부락	마을	• 평창군농업기반시설물운영관리조례	1
부락	마을	• 평창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	1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박용호)

- 본 조례안은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를 사용하는 우리군 조례안을 일괄정비 하여 행정용어의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일본식 한자어 사용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1부.

일본식 한자어 사용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

제1조(「평창군 HAPPY700 사랑나눔운동 지원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HAPPY700 사랑나눔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1구좌”를 “1계좌”로 한다.

제2조(「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지득한”을 “알게 된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후단 중 “묘지.납골당”을 “묘지·봉안당”으로 한다.

제4조(「평창군 반 설치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다목 중 “자연부락”을 “자연마을”로 한다.

제5조(「평창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호 중 “행선지”를 “목적지”로 한다.

제6조(「평창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호 중 “계기”를 “규정”으로 한다.

제7조(「평창군농업기반시설물운영관리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농업기반시설물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자연부락”을 “자연마을”로 한다.

제8조(「평창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후단 중 “자연부락단위”를 “자연마을 단위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